

## 제 5 장 내부 신고 제도

### 제 21 조 (목적 및 적용대상)

회사는 윤리경영 실현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 내부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적용대상은 회사의 소속 전 임직원으로 한다.

### 제 22 조 (신고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윤리규정 위반행위, 정보자산 유출행위 등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부서로 신고 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행위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신고방해·부정행위 은폐 등을 하는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 23 조 (신고 방법)

1.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가. 회사 홈페이지 “내부신고” 에 게재
  - 나. 준법감시부서(경영진단팀)의 사내전화 발신
  - 다. 준법감시부서(경영진단팀)에 대한 우편(이메일 포함) 발송
2. 신고자는 실명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사실만을 신고하여야 하고, 가급적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3.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 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 또는 연락을 할 수 있다.

### 제 24 조 (신고자 등의 보호)

1. 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 가. 신고내용을 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임직원, 업무상 내부신고 내용을

이관 받은 관련부서의 임직원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정보를 획득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1) 신고자의 성명, 사진, 근무지 등 일체의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
- 2) 신고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

나. 신고자 당사자 외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접수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조사에 조력한 자 또한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 다. 신고자 또는 조력자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 2. 신고자 등의 보호

가. 임직원은 내부신고제도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진술 등을 한 내용이 허위사실·무고·과장된 것으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나. 신고 또는 조사에 협조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신분보장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경위를 신속히 파악하여야 하고,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면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을 처분한 자는 징계하여야 한다.

## 제 25 조 (조사 절차)

1. 준법감시부서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내용이 준법감시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관련 부서로 조사를 이관하여 처리하거나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준법감시부서는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접수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 할 수 있다.

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회사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제 26 조 (조사결과의 통지)

1. 준법감시부서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준법감시부서로부터 조사를 이관 받은 부서는 조사결과를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준법감시부서는 통보 받은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준법감시부서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신고자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27 조 (신고자의 책임 감면)

1. 내부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 자신의 비위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
2. 내부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